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노금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공모전 개최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 행사 개최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호, 안 제4조의2 신설)

- 충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메뉴 레시피 발굴 등 식품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요리 경연대회와 같은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의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 신설.

-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 규정 신설.

나.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제한 (안 제6조제5항)

- 현행 규정에서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,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함.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기존 조례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모전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수행과 시상 등에 대한 근거 규정.
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 지역 내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 위반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 없음.
-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타 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며,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로 타당함.
-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안 제2조제1호의 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제명에 맞춰 수정함.
 - 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조항을 넣어 간결하게 정리하고,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 개최·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4조의2 음식문화 활성화 개최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, 행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,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법인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및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
 - 안 제5조4항의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「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수정함.

- 안 제6조제5항 위원의 임기를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, 위원의 연임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함.

○ 그 밖에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`24. 11. 19.~`24. 11. 2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다.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,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음.

○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, 조문 배치와 표현이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됨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

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행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